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3가합107585 증권관련집단소송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원고(대표당사자) 김지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길 27, 2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봉

피 고 1. 장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1, 포스코더샵 103동 1115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이수진

2. 유왕돈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B동 17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3.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7, 8층

대표이사 김수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혜진

주 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별지1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경과

가. 원고(대표당사자)는 2013. 11. 25. 피고들을 상대로 각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기2787, 2014카기10064(병합), 2014카기10065(병합) 소송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대표당사자)를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8. 8. 22. 위 소송허가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허가결정은 피고들이 즉시항고를 취하함으로써 2018. 9.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대표당사자)는 2018. 11. 5. 별지1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화해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11. 2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화해허가 신청사실 및 그 내용을 공고하였고, 2018. 12. 6.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헤럴드경제 지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같은 날 확인된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였다.

2. 화해사항에 대한 판단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공정성

양당사자는 화해금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성

화해금액 1,490,779,073원(제외신고 전 화해금 1,500,000,000원 -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이 1,50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 합계 9,220,927원)은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을 공제한 전체 손해액 3,568,450,346원(3,590,522,310원 - 22,071,964원)의 약 4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적정성

재판상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총원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상화해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1.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효진



판사

김세준



화 해 사 항

1. 총원의 범위

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1. 26.까지 및 2011. 2. 9.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유통시장에서 위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별지2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및 정상주가 내역> 중 '정상주가'란 기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위탁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다만 위 시세조종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매수가격 이상으로 매도한 결과 손해가 없게 된 자들은 총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총원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가. 제외신고 전 지급총액

피고들이 제외신고 전 총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15억 원으로 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원고(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총원이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피고 진매트릭스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손해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산정된 총원 1,342명에 대한 손해액은 합계 3,590,522,310원이다.

다. 제외신고자 처리

제외신고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대표당사자)에게 위 15억 원에서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이 원고(대표당사자) 주장의 손해액 합계 3,590,522,31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화해금의 산정

제외신고기간(2018. 11. 2.부터 2019. 1. 12.까지) 동안 구성원 11인이 제외신고를 하였고 그 손해액 합계는 22,071,964원인바, 위 제외신고자 처리방법에 따라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을 공제하여 화해금을 다시 산정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화해금은 1,490,779,073원(1,500,000,000원 - 구성원 11인 합계 9,220,927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90,779,073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화해금의 지급기일, 지급방법, 지연손해금

피고들은 각자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90,779,073원을 이 사건 화해허가결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대표당사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변호사보수 및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원고(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없이 피고들이 지급한 화해금의 23%(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한 화해금에서 위 변호사보수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대표당사자) 주장의 전체 손해액 3,590,522,310원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면책

가. 원고(대표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은 피고들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행정·사법기관에 피고들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조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총원의 각 구성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

하였기 때문에 위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7. 소송비용 및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끝.

별지2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및 정상주가 내역>

(단위 : 원)

일자	주가	정상주가
2010. 12. 30.	7,890	6,130
2011. 1. 3.	7,910	6,262
2011. 1. 4.	7,950	6,316
2011. 1. 5.	8,010	6,354
2011. 1. 6.	8,100	6,405
2011. 1. 7.	8,050	6,458
2011. 1. 10.	8,200	6,529
2011. 1. 11.	8,300	6,519
2011. 1. 12.	8,390	6,553
2011. 1. 13.	8,400	6,535
2011. 1. 14.	9,120	6,546
2011. 1. 17.	9,220	6,505
2011. 1. 18.	8,850	6,419
2011. 1. 19.	8,550	6,485
2011. 1. 20.	8,900	6,475
2011. 1. 21.	8,990	6,325
2011. 1. 24.	9,020	6,342
2011. 1. 25.	9,000	6,248
2011. 1. 26.	7,650	6,266
2011. 1. 27.	6,510	영향 없음
2011. 1. 28.	6,360	"
2011. 1. 31.	6,410	"
2011. 2. 1.	6,420	"
2011. 2. 7.	6,470	"
2011. 2. 8.	6,620	"
2011. 2. 9.	7,610	6,250
2011. 2. 10.	7,910	6,184
2011. 2. 11.	8,040	6,072
2011. 2. 14.	7,910	6,114
2011. 2. 15.	8,490	6,110
2011. 2. 16.	8,900	6,073
2011. 2. 17.	9,200	5,920
2011. 2. 18.	9,140	6,036
2011. 2. 21.	9,800	6,070
2011. 2. 22.	9,670	5,910
2011. 2. 23.	9,840	5,819
2011. 2. 24.	9,600	5,707

2011. 2. 25.	8,160	5,831
2011. 2. 28.	7,460	5,738